



IDNYC 신청자 서류 안내



IDNYC 카드를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신원 확인 점수가 3점 이상이고 뉴욕시 거주지 입증하는 점수가 1점 이상으로 4점 이상을 갖춘 서류.
2. 제출한 서류 중에서 하나 이상에 사진이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제출한 서류 중에서 하나 이상에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IDNYC 카드 신청자는 14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아래에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류 사본과 발행 기관이 인증한 사본만 허용되며 코팅된 서류는 코팅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IDNYC 카드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정보는 IDNYC 웹 사이트 WWW.NYC.GOV/IDNY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지침은 IDNYC 신청서 뒷면을 확인해 주십시오.

4점 서류 - 신원 및 거주지 증빙 서류

- 현재 뉴욕시 주소가 포함된 뉴욕주 차량국(DMV)의 운전면허증 또는 임시 운전면허증. 만료된 뉴욕주 차량국 면허증/임시 면허증은 만료하지 않았으며 ID 번호가 동일한 차량국 중간 운전면허증/임시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할 경우 허용됩니다.
- 현재 뉴욕시 주소가 포함된 뉴욕주 차량국 비운전자 ID 카드. 만료된 뉴욕주 차량국 비운전자 ID 카드는 만료하지 않았으며 ID 번호가 동일한 차량국 중간 ID 카드와 함께 제출할 경우 허용됩니다.
- 현재 뉴욕시 주소가 적힌 미국 국무부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ID 카드
- 현재 집 주소가 포함된 IDNYC 카드
- 현재 뉴욕시 주소가 포함된 뉴욕시 경찰국(NYPD) 제한적 권총 소지 면허증

계속... 2점 서류 - 신원 증빙 서류

- 외국 운전면허증(컴퓨터 판독 가능)
- 외국 국가 신분증(컴퓨터 판독 가능)
- 사회보장 카드
- 미국 ITIN 통지서
- 미국 상이군인(Uniformed Services) ID
- 뉴욕주 교육부 전문 ID 카드
- 뉴욕시 교육국(DOE) 학생 확인서 (거주지도 증명)
- 뉴욕시 SYEP (Summer Youth Employment Program) 확인서 (거주지도 증명)
-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발행했으며 사진과 지문이 포함된 I-94 양식
- 뉴욕주 차량국(DMV) 중간 운전면허증, 임시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ID 카드
-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행한 I-797, I-797A, I-797B 또는 I-797D 양식에 대한 승인 통지서

3점 서류 - 신원 증빙 서류

- 미국 여권 또는 미국 여권 카드
- 외국 여권(컴퓨터 판독 가능)
- 미국 주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또는 임시 운전면허증 사진이 있는 ID
- 미국 주에서 발행한 ID 카드
- 미국 영주권 카드(그린 카드)
- 미국 시민자 증서/귀화증
- 미국 상선 선원 증서
- 현재 집 주소가 없는 미국 국무부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ID 카드
- 뉴욕주 교정 및 지역 안보국(DOCCS)의 석방된 범죄자 ID 카드 (1년 이내 발행)
- 뉴욕주 통합 사법체계 변호사 보안 출입증
- 공용 출입증(현역 또는 퇴역 또는 예비군)
- 최신 미국 취업 허가증
- 미국 부족 ID
- 사진이 있는 뉴욕주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CBIC
- 현재 집 주소가 없는 IDNYC 카드

1점 서류 - 신원 증빙 서류

- 외국 국가 신분증(컴퓨터 판독 불가능)
- 외국 출생 증명서
- 사진이 있는 외국의 군대 ID 카드
- 외국 운전면허증(컴퓨터 판독 불가능)
- 교육기관 ID 카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교육 기관
- 미국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또는 미국 고등교육 기관 또는 대학교의 졸업장
- 미국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 기관, 대학교의 학교 성적표(Transcript)
- 사진이 없는 뉴욕주 EBT 카드
- 뉴욕시 SYEP ID 카드
- 사진이 있는 미국 노동조합 ID
- 성직자 ID를 포함하여 미국에 위치하는 조직이 발행한 직원, 컨설턴트 또는 이사회 구성원 ID 카드
- 결혼 증서, 합법적 동성 결혼 증서, 동거인 증서 또는 이혼 증서
- 고통자와 장애인을 위한 MTA MetroCard
- MTA Access-A-Ride ID 카드
- 뉴욕시 공원 레크리에이션 센터 멤버십 카드
- 미국 유권자 등록 카드
- 미국 병영 징집 대상자 등록(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카드
- Medicare 카드
- 미국 ITIN 카드
- 자녀의 미국 출생 증명서(신청자가 부모로 되어 있어야 함)
- 사진이 있는 뉴욕주 OMH 시설 ID 카드

2점 서류 - 신원 증빙 서류

- 외국 여권(컴퓨터 판독 불가능)
- 만료된 미국 여권 또는 여권 카드(만료일로부터 3년 미만, 컴퓨터 판독 가능)
- 만료된 외국 여권(만료일로부터 3년 미만, 컴퓨터 판독 가능)
- 영사 ID 카드
- 재향군인국(VA)에서 발행한 미국 재향군인 ID 카드
- 재향군인국(VA)에서 발행한 미국 재향군인 의료 ID 카드
- 미국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직원 ID
- 미국 출생 증명서
- 미국 국무부에서 발생한 비자

1점 서류 - 거주지 증빙 서류

- 케이블 서비스, 전화 또는 공공요금 청구서나 명세서(60일 이내)
- 현재 거주지의 임대 또는 서브리스 계약서
- 지방 재산세 명세서(1년 이내)
- 부동산 모기지 상환 영수증(60일 이내)
- 은행, 금융 또는 신용카드 계좌 청구서, 명세서 또는 통지서(60일 이내)
- 급여 명세서(60일 이내)
- 의료 기관이 발행한 명세서, 청구서 또는 기록(1년 이내)
- 뉴욕주(뉴욕시 법원 포함) 또는 연방 법원이 발행한 배심원단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60일 이내)
- IRS 양식 W-2, 1099-MISC, 1095-A, 1095-B 및 1095-C(양식에 적힌 과세 연도 다음 해의 4월 15일까지 허용)
- 세금 신고 접수증을 포함한 세금 환급(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 IRS 또는 뉴욕주 세무국(DTF)이 발행한 서신 또는 문서(1년 이내)
- 보험료 청구서, 명세서 또는 기록(주택 소유주 보험, 생명보험, 임차인 보험, 자동차 보험, 의료보험, 60일 이내)
- NYCHA가 발송한 서신(60일 이내)
- NYCHA 임대차 계약 부록 및 임대 통지서(1년 이내)
- USPS 주소 변경 확인서(60일 이내)
- 뉴욕시 HPD 섹션 8 임대 내역서(1년 이내)
- HRA "예산 산정 보고서" 요청에 대한 답변서(60일 이내)
- 사진이 있는 뉴욕주 OMH 시설 입원환자 ID 카드
- 미국 HHS/ORR이 발행한 "퇴원 확인서(Verification of Release)"(1년 이내)
- 미국 이민관세수사청(ICE)의 감독 명령 (1년 이내)
- 뉴욕주 차량국(DMV) 중간 운전면허증, 임시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ID 카드
- 뉴욕주 OPWDD가 발행한 발달 장애 결정 또는 확인 통지서(NOD)(1년 이내)
- UN 외교관과 그 가족을 위한 거주지 확인서(60일 이내)
- Head Start, Early Learn 또는 모든 NYC DOE 학교에 등록된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안내문(60일 이내). 신청자는 학생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립학교 또는 교구 학교에 등록된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 안내문(60일 이내) 신청자가 학생의 부모일 경우, 학생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ACS 또는 ACS 위탁 보육 기관의 안내서(60일 이내)
- 뉴욕시 교육국(DOE) 학생 확인서(DOE 학교에서 입학 가능)
- SYEP 확인서
- 뉴욕시 노숙자 보호소가 발행한 서신(신청자가 해당 시설에서 15일 이상 체류했으며 이 시설은 30일 이상 거주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뉴욕주 OPWDD, NYS OMH, NYS DOH 또는 NYC DOHMH가 운영하거나, 인증하거나, 자금 지원을 하는 주거 시설에서 보낸 서신(60일 이내)

배우자 및 동거인: 본인의 이름이 포함된 위의 거주지 증빙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지 못하여 거주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신청자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이름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고 (1) 결혼 증서, 합법적 동성 결혼 또는 동거인 관계 증서, (2)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녀의 출생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신청자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을 명시한 서명한 증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1점 서류 - 집 주소가 없는 신청자나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거주지 증빙 서류

- 노숙자나 가정 폭력 피해자를 돌보는 뉴욕시 비영리 기관 또는 종교 기관이 발행한 "Care-of Letter". 기관은 현재 뉴욕시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신청자가 지난 60일 동안 이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우편물을 받을 때 이 기관의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4일 이내). 카드의 주소는 이 기관이 "Care-of"가 됩니다.

계속... 1점 서류 - 집 주소가 없는 신청자나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거주지 증빙 서류

- 노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시의 시 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종교 기관이 보낸 서신(30일 이내). 이 경우 카드에 주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시의 시 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종교 기관이 보낸 서신(30일 이내). 이 경우 카드에 주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뉴욕시 병원 또는 의원이 발행한 서신(30일 이내)

보호자 관계 - 보호자와 신청자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빙 서류

신청자는 생년월일을 포함한 신원을 입증하는 2점 이상의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포함하여 본인의 신원을 입증하는 3점 이상의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청자 연령은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21세 이하)
- 입양 결정문, 입양 증서 또는 뉴욕주 DOH 입양 신고서 (21세 이하)
- 뉴욕시 DOHMH와 뉴욕주 OTDA가 발행한 부권 인정서(21세 이하)
- ACS 또는 ACS 위탁 보육 기관의 안내서(21세 이하)
- 부권/친자 관계의 법원 명령(21세 이하)
-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 및 의붓부모의 결혼 증서, 합법적 동성 결혼 또는 동거인(21세 이하)
- 미국 HHS/ORR이 발행한 "퇴원 확인서(Verification of Release)"(21세 이하)
- 보호자를 신청자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명한 외국의 법원 명령(21세 이하)
- 보호자를 신청자의 법적 후견인, 관리인 또는 재산 관리인으로 지명한 미국 법원 명령(전체 연령)
- 뉴욕주 OPWDD가 발행한 발달 장애 결정 또는 확인 통지서(NOD)(전체 연령)
- 거주 보호 시설이 보낸 서신(60일 이내, 전체 연령)
- 보호자를 신청자의 대리 수취인으로 지명한 SSA의 서신 (1년 이내, 전체 연령)
- 특정 직책을 신청자의 대리 수취인으로 지명한 SSA의 서신 (1년 이내) 및 직원/대리인이 신청자를 대표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알리는 서신 (60일 이내, 전체 연령)
- 뉴욕주 OPWDD, NYS DOH, NYS OMH, NYC DOHMH 또는 그 서비스 제공자가 보낸 서신(60일 이내, 전체 연령)

퇴역군인 자격 증빙 서류(하나만 필요)

- DD 214: 퇴역 또는 전역 증서
- DD 2(은퇴): 미국 상이군인(Uniformed Services) ID 카드(은퇴)
- VIC/VHIC: Veterans Affairs 병원 ID 카드
- NGB-22: 주방위군국(National Guard Bureau) 이혼 신고서 및 서비스 기록
- 재향군인 임명이 포함된 뉴욕주 DMV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ID
- 재향군인 임명이 포함된 IDNYC 카드
- 군복무를 확인하는 뉴욕시 재향군인 담당실(MOVA)의 증명서

보호관찰국(DOP)

- DOP 고객은 뉴욕시에 위치하는 모든 IDNYC 등록 센터에서 보호관찰국에서 얻을 수 있는 DOP 확인서를 사용하여 IDNY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